예산총칙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_	(단위 · 전권)
회		Я				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0						계	7,279,761,062	218,388,000
일		반		회		계	6,642,114,461	199,263,000
특		멸		회		계	637,646,601	19,125,000
	기	타	특	超	회	계	637,646,601	19,125,000
	의	료	급	여	기	ПО	473,758,347	14,212,000
	김	해 관 공	망 유 통	단 지 3	조 성 사	겁	356,171	10,000
	광	역	卫	통	Л	설	18,110,863	543,000
	경	상 남	도 지	역 균	형 발	전	13,695,565	410,000
	특	정 자	원 지 9	역 자 원	! 시 설	세	19,089,000	572,000
	소					바	79,487,655	2,384,000
	학	卫	용 7	디 부	담	己	33,149,000	994,00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000,775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91,900,000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